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(대안)

의 안 번 호 1433

제 안 년 월 일 : 2013년 7월 5일

제 안 자:행정자치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 경위

의안번호 1292번 2013년 4월 9일 김형태 의원외 12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2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(2013. 4. 23) 및 제247회 정례회제2차 행정자치위원회(2013. 7. 2)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결과,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·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 이유

○ 제정조례안의 성격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하며, 공익제보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소관사무 와 관련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로 명확히 하고,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 기 업의 지정, 공익제보자의 구조금 지급 신청,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에 대 한 책임과 권한을 시장이 갖도록 하며, 공익제보위원회가 이에 대한 심의 결정·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, 공익제보자 지원 중 '지방공무원 채용시 가 산점 부여', '시 계약직 공무원 등의 특채', '부패 행위를 내부신고한 공무 원인 경우 직급승진 등의 가산점 부여'등의 경우 상위법령과의 상충성 등 을 고려하여 삭제하고, 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시 감사관내 소관 부서 의 장으로 하여금 공익제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,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의 선정,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조치 강구, 공익제보 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의 우선 처리 등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 완하고, 공익제보 접수처로"시가 별도로 정하는 시민단체"를 제외하되, 시 민단체를 통해 제보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,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 및 조문구성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 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하며,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함(안 제명, 안 제1조).
- 나. 공익제보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상의 공익신고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」상의 부패신고로 하는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(안 제2조).
- 다.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않을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명시함(안 제3조).
- 라.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의무를 명시함(안 제4조).
- 마.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를 명시함(안 제5조).
- 바. 공익제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(안 제6조, 안 제7조).
- 사.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 및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함(안 제8조, 제9조).
- 아. 구조금 및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(안 제10조~안 제12조).
- 자.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전담팀을 두어 공익제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(안 제13조).
- 차.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환경 조성사업을 선정하도록 함(안 제14조)

- 타.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 기업의 지정과 민간기업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~제17조).
- 파.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,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기관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18조~안 제20조)
- 하.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해 홍보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며, 관련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 21조, 안 제22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
- 나. 관계기관 협의 여부: 감사관, 조직담당관 협의.
- 다. 기 타:
 - (1) 입법예고 결과: 접수의견 없음.

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,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특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공익제보"란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상의 공익 신고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의 부패 신고를 통칭한다.
- 2. "공익제보 조사"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 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.
- 3. "공익제보자"란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자를 말한다.
- 4. "공익제보자 등"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·수사·소 송 등에서 진술·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.
- 5. "불이익 조치"란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.
 - 가.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 익조치
 - 나.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 제한,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
 - 다. 전보, 전근,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
 - 라.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
 - 마.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,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,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

- 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,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
- 바.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,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, 그 밖에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
- 사.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(監査)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
- 아. 인허가 등의 취소,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
- 자.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(解止),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
- 6. "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"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.
- 7. "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"이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시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8. "보조금"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 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- 제3조(시민의 권리와 참여) ① 서울특별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은 공 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, 여타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 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.
- ②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, 시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한다.
- 제4조(시장의 의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공정한 공 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

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③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) 시가 관할하는 기관과 시에 소재한 기업, 단체,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등 여러 위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6조(공익제보 지원위원회) ①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공익제보 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1.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자문
 - 2.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ㆍ지원 심의
 - 3. 제10조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사항의 권고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심의
 - 4.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- 5.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 - 6.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, 민간기업, 시민·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
 - 7.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8.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
 - 9.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
 - 10.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

사항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,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 위원으로 한다.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한다. 시 감사관은 당연직으로서 부위원장으로 한다.
- ③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감사관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.
 - 1.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
 - 2.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, 비영리 민간단체·법인,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
 - 3.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분야 근무 경험이 있고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·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
 - 4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시의회가 추천하는 2명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.
-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2.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 - 3.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 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- 제7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, 위원장이 필요시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서 임시 개최할 수 있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,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8조(공익제보의 접수 등) ① 시민은 누구든지 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할 수 있다. 다만, 시민단체를 통해 공익제보한 경우에도 달리 차별하지 아니한다.
 - 1.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, 단체, 기업 등의 대표자 또 는 사용자
 - 2. 시
 - 3. 시의원
 - 4. 위원회
-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.
 - 1. 공익제보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.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. 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 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.
 - 2. 위법 행위를 하는 자
 - 3. 공익제보 내용
 - 4.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구술(口述)로 신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 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9조(공익제보자의 보호 등)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 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 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②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- 제10조(공익제보자 지원 등) 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 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시장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 - 1. 육체적·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·입원·투약·수술 등에 소요 된 비용
 - 2. 전직·파견근무·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
 - 3.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· 노무사 등의 수임료
 - 4.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.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(이하 "월평균액"이라 한다). 다만,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.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,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 - 5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(제2조 제5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에 대한 경우만 적용한다)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시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,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여타 법률 구제로서 구조금을 지급 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⑤ 시는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, 시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 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.
- ⑥ 시장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,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1. 공익제보자 등이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월평균액의 지급. 다만, 월평 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, 지급 산정기간은 36개 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 - 2.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
- 제11조(보상금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시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 - 1.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
 - 2. 과징금(인허가 등의 취소·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·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)의 부과
 - 3.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

- 가. 지방세의 부과
- 나.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
- 다.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보 호법 시행령의 [별표 2]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산정된 보상금 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④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시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,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,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
- ① 시장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,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, 진술 및 자료 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보상금 지급 신청인,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,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⑧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 금 지급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) 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신청하

- 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. 다만 공익제보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신청 사실이 발생하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,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, 그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.
-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)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 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 야 한다.
-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위하여 전담하는 팀을 두어 공익제 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.
 - 1. 온라인·우편·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통합 처리
 - 2. 각 기관, 단체, 기업으로부터 송부 이첩된 제보 사항의 분석 처리 3.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무 처리
- ③ 공익제보센터는 제보가 접수 또는 이첩되는 즉시,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.
- ④ 시가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조사 조치하며, 내용이 타당하나 시의 사무와 관계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고 그 처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

- 다. 그러나 시의 사무와 관계 있음에도 기각하는 경우에는, 소관부서의 장(이하'담당관'이라 한다)의 결재를 통하며 담당관은 월별로 기각 사항에 대한 관계 서류 모두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⑤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⑥ 접수 후 보호 및 지원조치가 필요한 경우,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⑦ 신고 접수 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,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)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(이하 "환경조성사업"이라 한다)을 선정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15조(공익제보자 보호 우수 기업의 지정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.
 - 1.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명시
 - 2.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공개된 장소 비치
 - 3. 1년에 2회 이상 이사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사항 보고
 - 4. 등기이사로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 선정
 - 5. 직급별 3인 이상의 공익제보 접수자 선정
 - 6. 접수된 공익제보 자료의 5년 이상 보관
 - 7. 공익제보자의 신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분기별 점검
 - 8. 비정규직 등도 공익제보자 보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
 - 9.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 실시

- 10. 공익제보 접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 실시
- 제16조(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)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·단체·기타 법인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.
 - 1. 지역 내 기업, 경제단체,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·운영
 - 2. 지역 내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
- 제17조(우선구매 등 지원)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.
- 제18조(보조금 지급의 특례)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 「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,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지원할 수 있다.
- 제19조(표창의 수여)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, 개인,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
- 제20조(교육지원)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 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 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21조(홍보 등)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- 1.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

- 2. 전문가 포럼,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
- 제22조(민원사무처리의 특례)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.
- 제2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